- '16. 5월 소득세 신고 -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2016. 5.

1. 변경사항 ····· 1

1-`1. 세법개정 ····· 1

1-`2. 개선사항 ····· 12

2. 자주 묻는 질문 ····· 24

2-`1. 납세자용 ····· 24

2-`2. 세무대리인용 ····· 42

NTS 국세청

1 세법개정, 화면개선 등 변경사항

1-1 세법개정

1 난임시술비

□ (난임시술비) 난임시술비는 전액공제

○ 의료비에 전액공제 항목으로 추가된 계산기능 제공

2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후순위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후순위)** 연금 수령시 공제를 받으면 과세 적용(미공제시 비과세)

○ 종합소득금액보다 소득공제(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가 큰 경우는 전액 공제를 못 받거나 일부 금액만 공제 받도록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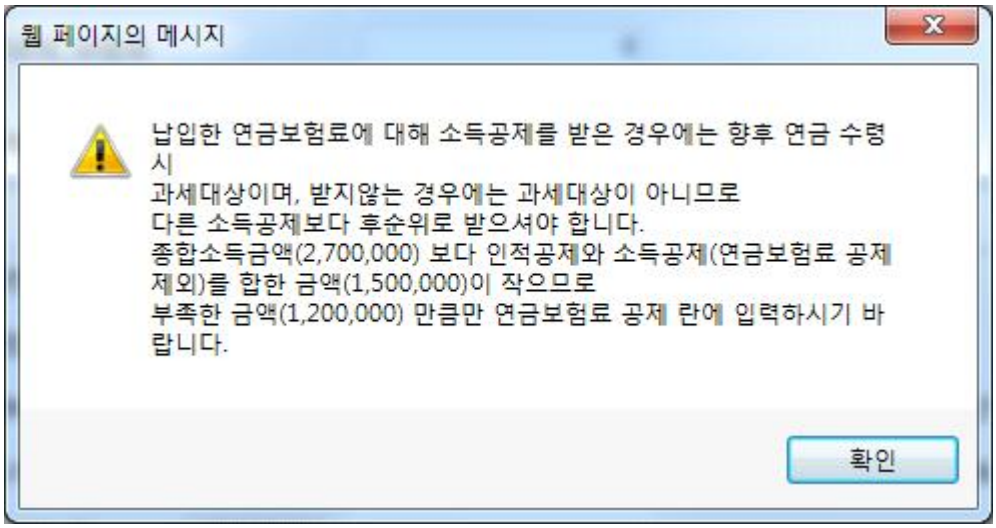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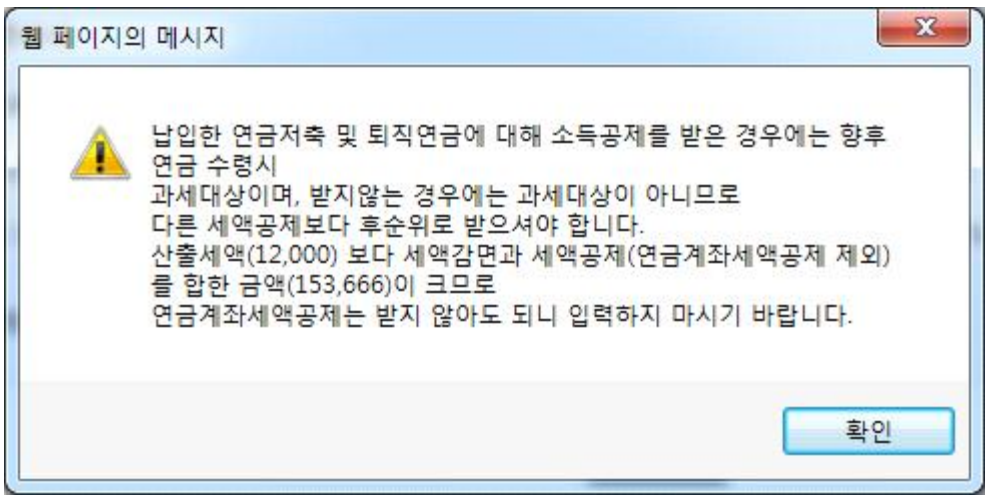

3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퇴직연금 700만원까지 공제 확대

○ 연금계좌 계산기에서 한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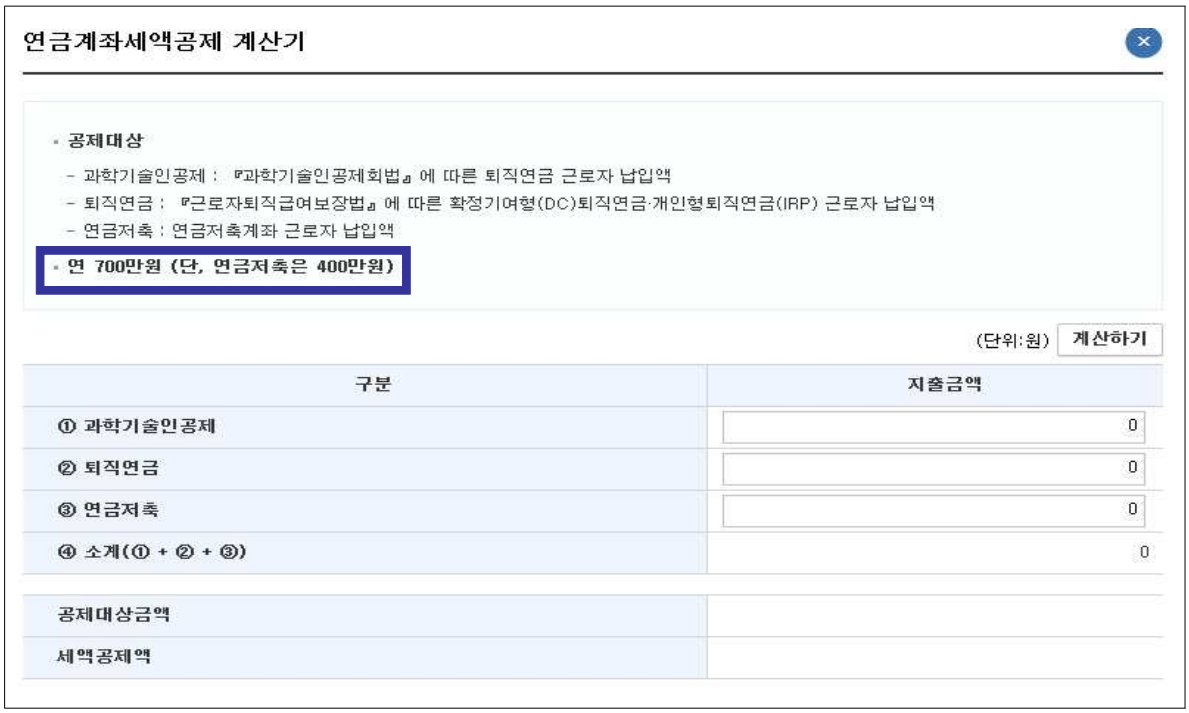

연금계좌세액공제 계산기

- 공제대상
  - 과학기술인공제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 연금저축 :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 연 700만원 (단, 연금저축은 400만원)

(단위:원) 계산하기

구분	지출금액
① 과학기술인공제	0
② 퇴직연금	0
③ 연금저축	0
④ 소계(① + ② + ③)	0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로 전환

□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세액공제로 전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 기부금 조정명세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구분	기부금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필요경비	소득·세액 공제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정치자금 10만원 이하	0	43,750,000			100,000
정치자금 10만원 초과			0		400,000
법정기부금(이월)	0	43,350,000	0	0	1,000,000
법정기부금(당해)			0		3,000,0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0	11,805,000	0	0	1,000,000

5 신용카드 추가 공제율 사용분

□ (신용카드 추가공제) '15년 본인의 추가 사용분 공제

○ 신용카드 공제 계산기에 '15년 본인의 추가 사용분 항목 추가

▪ **아래 항목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①+②+③+④-⑤+⑥+⑦)에 해당하는 금액**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 3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 30%
③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④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15%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15%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⑥ 2014년 신용카드등사용액이 201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많은 자의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신용카드 사용분 제외, 이하 '추가공제율사용분'이라 함)

- ('15.1.1~'15.6.30.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 10%

⑦ 2015년 신용카드등사용액이 201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많은 자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 ('15.7.1~'15.12.31.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 20%
-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 ('16.1.1~'16.6.30.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 20%

▪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추가공제 (최대 500만원 한도)**

-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①(100만원 한도) + ②(100만원 한도)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공제합니다.

(단위:원) 계산하기

상단의 1번부터 5번까지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사용금액, 하단은 본인의 사용금액만 입력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총 급여액	10,000,000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합계	0	0
① 전통시장 사용액	0	0
② 대중교통 이용액	0	0
③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	0	0
④ 신용카드 사용액(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	0	0
⑤ 직불·선불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0	0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합계	0	0	0
본인의 전통시장, 대중교통,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2013, 2014년 란에는 연간 사용분 입력, 2015년 란에는 반기별 사용분 입력)	0	0	(상반기) 0 (하반기) 0

6 지방소득세 서식 개정

□ **(지방소득세 서식 개정)**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대상 변경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등 항목 추가, 계산식 변경

세액의 계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명세서

구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합소득금액	21	22,300,000				
소득공제	22	1,500,000				
과세표준(21-22)	23	20,800,000	41	20,800,000	61	0
세율(%)	24	0.00	42	0.00	62	0.00
산출세액	25	2,048,000	43	204,800	63	0
세액감면	26	0	44	0		
세액공제	27	158,692	45	15,869		
결정세액(25-26-27)	28	1,889,308	46	188,930	64	0
가산세	29	367,354	47	36,735	65	0
추가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30	0	48	0	66	0
합계(28+29+30)	31	2,256,662	49	225,665	67	0
기납부세액	32	0	50	0	68	0
납부(환급)할 총세액(31-32)	33	2,256,662	51	225,665	69	0
납부특례세액차감	34	0				
납부특례세액가산	35	0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36	0			70	0

신고기한이내 납부할 세액

종합소득세(33-34+35-36)	2,256,662
지방소득세(51)	225,665
농어촌특별세(61-70)	0

※환급받을 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움말버튼을 클릭하세요. 도움말

7 고배당 기업 주식 신설

□ (고배당 기업 주식 신설) 원천징수세율 9% 신설

○ 금융소득 산출세액 계산서에 14%외 9% 세율 추가

› 금융소득금액(5+9)이 종합소득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분	금액
10	금융소득금액(5+9)	
11	종합과세기준금액	
12	기준초과금액(10-11)	
13	배당가산액	
14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	
15	종합소득금액(12+13+14)	
16	소득공제	
17	과세표준(15-16)	
18	기본세율(%)	
19	산출세액	
20	[11×14/100,9/100] 세법도우미	
21	비교산출세액 계(19 + 20)	
22	비영업대금이익(1+3)×25/100	
23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10-(1+3)}	
24	[23×14/100,9/100] 세법도우미	
25	금융소득외의 다른종합소득(14)	
26	소득공제	
27	과세표준(25-26)	
28	기본세율(%)	
29	산출세액	
30	비교산출세액 계(22+24+29)	
31	종합소득산출세액(21,30:큰금액)	

› 금융소득금액(5+9)이 종합소득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분	금액
32	[(2+7) × (14/100,15/100)] 세법도우미	1,400,000
33	[3×(25/100)]	0
34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	12,300,000
35	소득공제	1,500,000
36	과세표준(34-35)	10,800,000
37	기본세율(%)	6.00
38	산출세액	648,000
39	종합소득산출세액(32+33+38)	2,048,000

8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확대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확대)**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가능금액 확대(48만원에서 96만원으로)

○ 주택마련저축 계산기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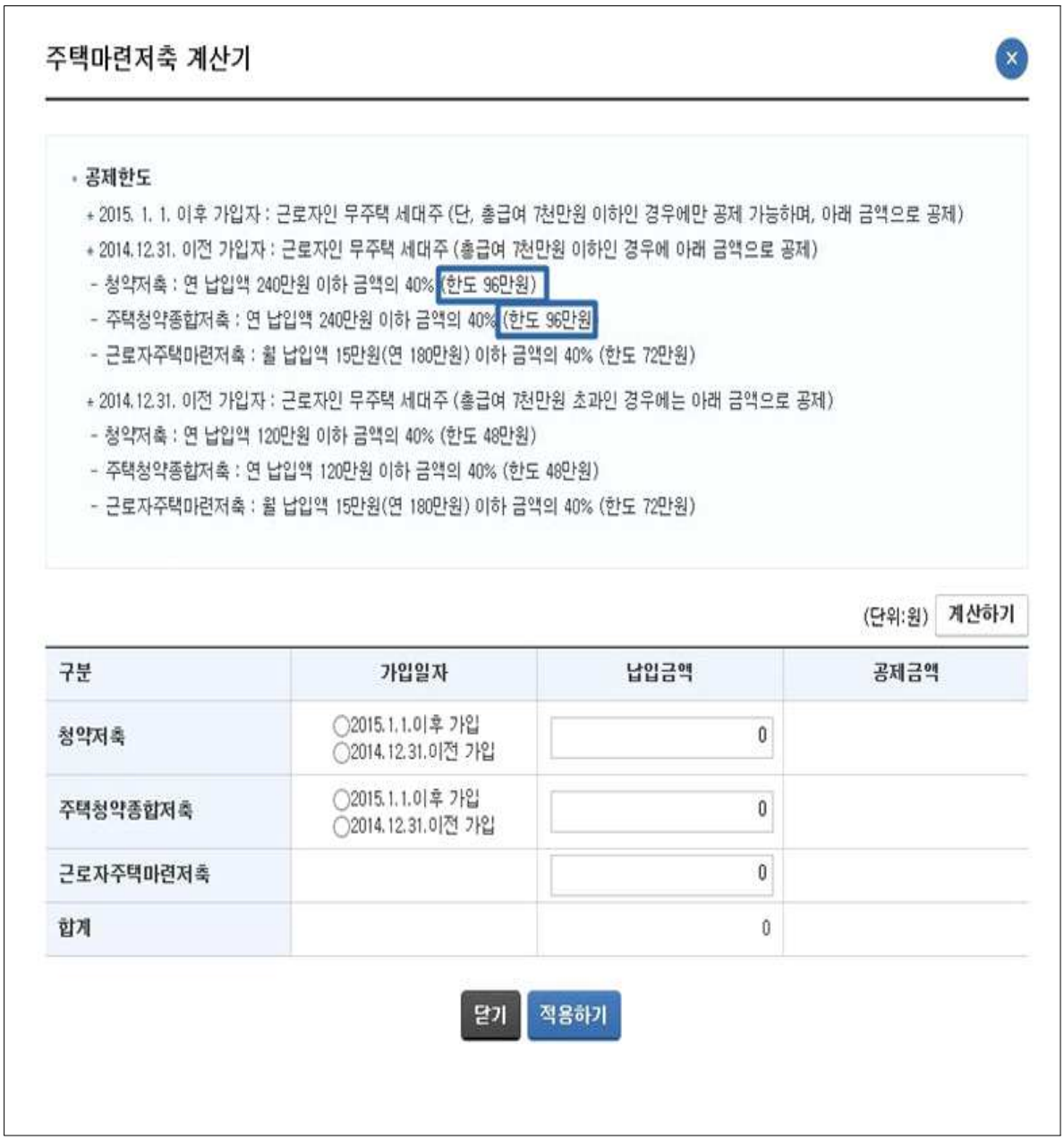

주택마련저축 계산기

- 공제한도
  - + 2015. 1. 1. 이후 가입자 :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 아래 금액으로 공제)
  - + 2014.12.31. 이전 가입자 :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아래 금액으로 공제)
    - 청약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금액의 40% (한도 96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금액의 40% (한도 96만원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 납입액 15만원(연 180만원) 이하 금액의 40% (한도 72만원)
  - + 2014.12.31. 이전 가입자 :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아래 금액으로 공제)
    - 청약저축 : 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금액의 40% (한도 48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금액의 40% (한도 48만원)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 납입액 15만원(연 180만원) 이하 금액의 40% (한도 72만원)

(단위:원) 계산하기

구분	가입일자	납입금액	공제금액
청약저축	○2015.1.1.이후 가입 ○2014.12.31.이전 가입	0	
주택청약종합저축	○2015.1.1.이후 가입 ○2014.12.31.이전 가입	0	
근로자주택마련저축		0	
합계		0	

닫기 적용하기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15년 이자공제 확대(1,800만원까지)로 관련 항목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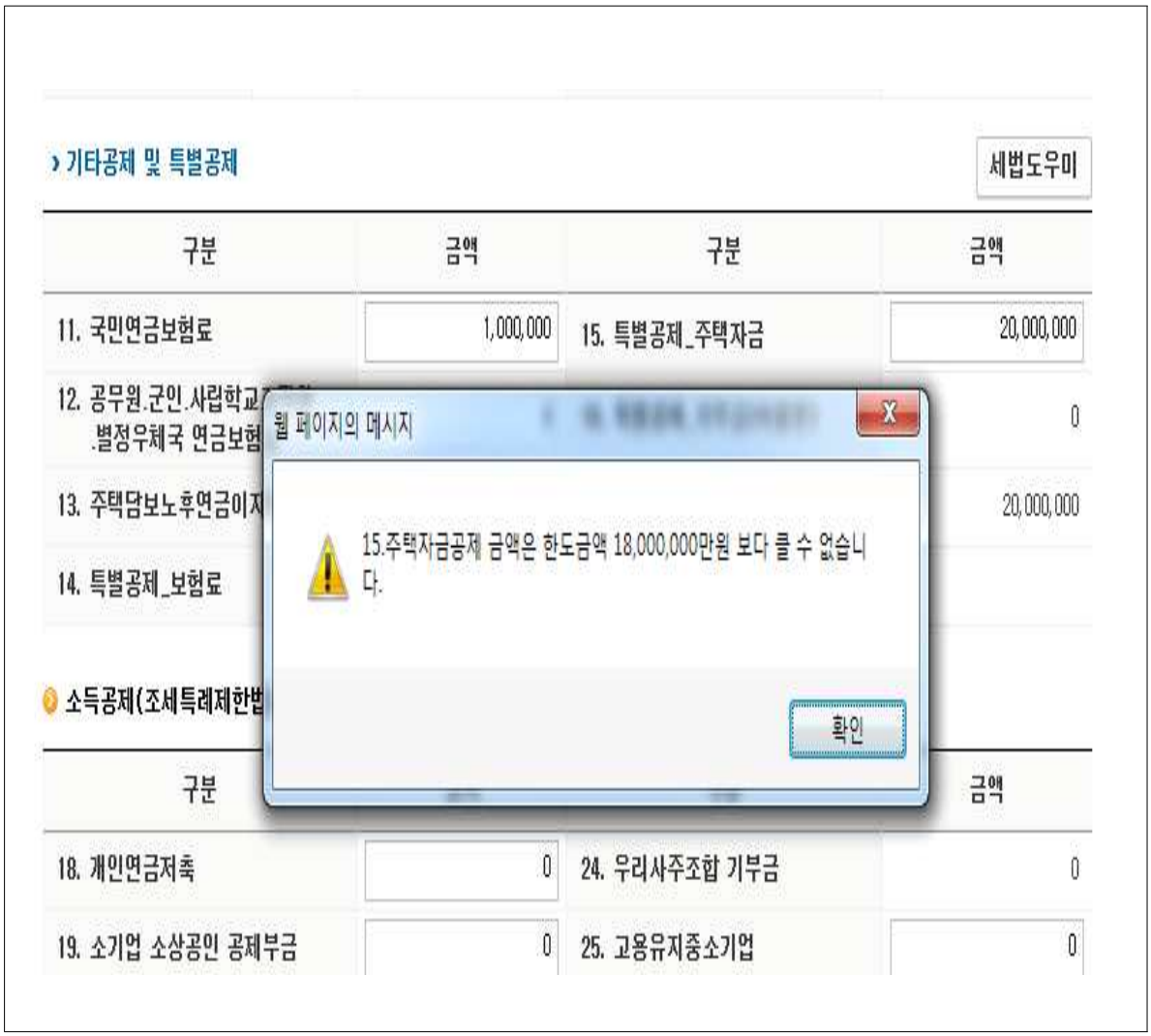

10 근로소득자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 **(근로소득자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당초 소득금액 100만원에서 총급여 5백만원(=소득금액 150만원)으로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요건 완화

○ 관련 내용을 도움말로 제공

소득공제명세서 세법도우미

▪ **기본공제**

- 기본공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소득금액요건 : 2015년귀속 부터 근로소득(150만원)만 있는 자는 연간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개정됨

기본공제대상자	공제요건			비고
	나이조건	소득금액요건 (연간 100만원 이하)	동거요건	
본인	X	X	X	X
배우자	X	O	X	X
직계존속	60세 이상 (1955.12.31.이전 출생)	O	O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1995.01.01.이후 출생)	O	X	X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X	X	O	X
형제자매	60세 이상 (1955.12.31.이전 출생) 20세 이하 (1995.01.01.이후 출생)	O	O	X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X	O	O	X
위탁아동	18세 미만 (1998.01.01.이후 출생)	O	O	X

※ 장애인의 경우 나이조건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제한을 받음

※ 나이조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함.

▪ **추가공제**

추가공제 대상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 이상(1945.12.31.이전 출생)	1인당 연 100만원

11 세액공제 신설

□ **(세액공제신청서 화면에 4개 추가)**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4개 세액공제 추가 반영

□ **(세액공제명세 화면에 1개 추가)**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 추가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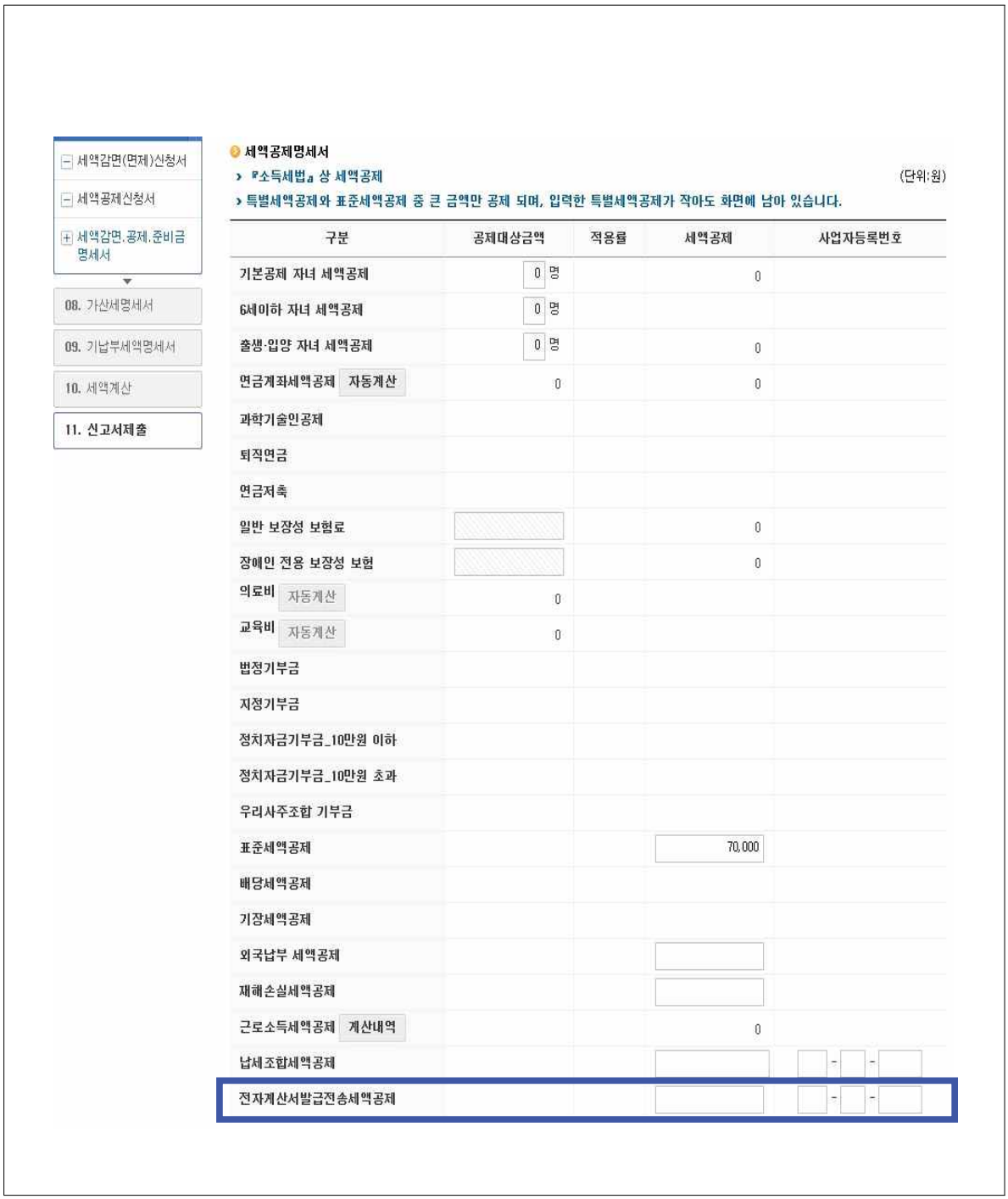

1-2 주요 개선사항

1 영세납세자를 위한 Full-filled 신고

□ 개요

○ 영세납세자(단일소득_단순경비율 : 약 150만명) 간편 신고를 위한 신고안내, 신고 시 Full-filled 서비스 제공

□ 주요 내용

○ (신고안내)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중 본인만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까지 채운 Full-filled 신고서 제공

- 변동사항이 없으면 서명만으로 신고 가능

○ (전자신고) 신고안내와 동일하게 기본공제 중 본인만 적용하여 납부 할 세액까지 모든 신고 정보 제공(정정 가능)

- 추가로 전년도 인적공제 신고 현황을 팝업으로 제공하고 납세자가 선택하면 나이요건 등 전산검증 후 수록

○ (서면신고 입력) 신고안내와 동일하게 기본공제 중 본인만 적용하여 납부 할 세액까지 모든 신고 정보 제공(정정 가능)

< 참고 > Pre-filled와 Full-filled의 제공항목 비교

구 분	Pre-filled	Full-filled
기본사항	제공	제공
필요경비	제공	제공
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만 제공	모두 제공(본인 기본공제,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등)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만 제공	모두 제공(단, 기부금, 입양공제 제외)
결정세액	제공	제공
기납부세액	미제공	제공(중간예납, 원천징수세액 등)
납부할세액	미제공	제공

전년도 인적공제 신고내역 제공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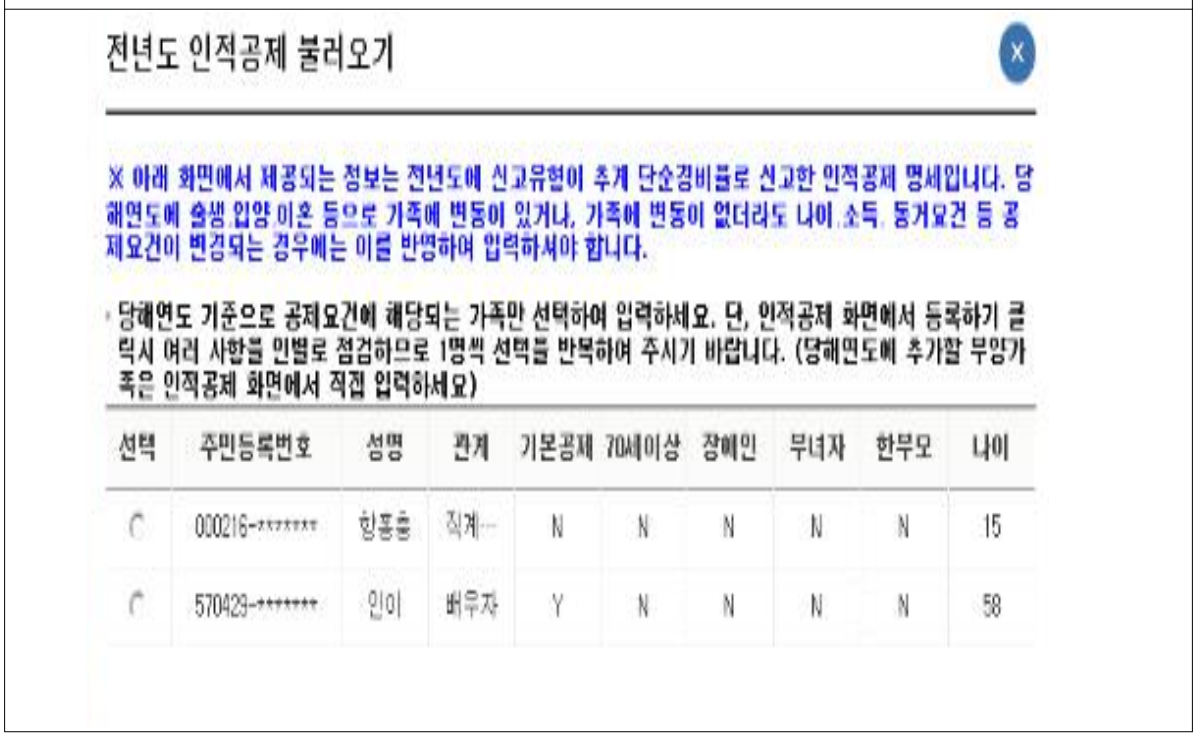

2 종합소득세 신고서 서명란 문구 시스템 적용

□ 개요

○ 신고서 작성 후 서명단계에서 신고인에게 신고서 허위기재, 불성실 세무대리에 따른 제재사실을 알려 성실신고 유도

□ 서명란 문구 안내 구분

○ 전자신고 사용자 로그인 기준으로 본인 신고자용과 세무대리인 신고자용으로 구분하여 안내

서명란 문구 적용 화면

본인 신고자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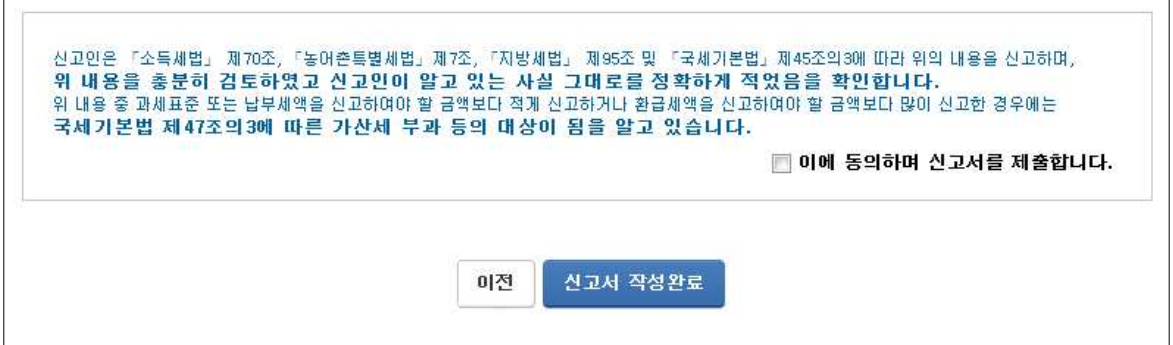

세무대리인 신고자용

3 4대보험 자료 수집방법 등 시스템 개선

□ 개요

○ 특별소득공제 항목 중 보험료공제 Pre-filled 관련 4대보험 자료 수집방법 등 변경에 따라 시스템 개선

□ 주요 변경사항

○ 자료 수보 방법 : 오프라인 → 온라인, 자료 수집 방법 : 연간 합계 자료 → 연간 월별 자료(국민연금공단 신규 추가)

4대보험 연간, 월별 자료 제공 화면

≡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조회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주민등록번호 조회와 동시에 확인 가능하며 2016년 2월말 기준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납부자번호(건강보험증 번호) 기준으로 작성된 납부내역입니다.(사업자번호 선택시 조회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건강보험료(직장) 연간납부금액에는 연말정산금액이 포함되어 월별 납부금액 합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귀속년도
2015
주민등록번호
조회하기
사업자번호
선택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내역
구분
월별납부금액
연간납부금액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조회
구분
월별납부금액
연간납부금액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
구분
월별납부금액
연간납부금액
고용보험료 납부내역
구분
월별납부금액
연간납부금액
산재보험료 납부내역
구분
월별납부금액
연간납부금액
• 이용안내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의해 4대 사회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보험료 납부내역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로 국민연금은 납부월 기준, 건강·고용·산재보험은 고지월 기준으로
건강보험은 2016년 4월 14일, 고용·산재보험은 2016년 3월 10일까지의 납부보험료이며 4대보험 모두 연체금, 신용카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바랍니다.
월별 납부금액 조회 팝업
※ 기타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바랍니다.
인쇄하기
구분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상호
물가
- 월별 납부내역
월
납부금액
1
450,400
2
450,400
3
450,400

4 사용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임시 홈페이지 운영

□ 개요

○ 금년 5월 소득세 신고, 장려금 신청 등 사용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신고기간 중 임시 홈페이지 운영

□ 필요성

○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 연간 중 한번 이용하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신고기간 중 운영(3.21. 전산운영과 협의 완료)

□ 주요 내용(운영기간 : 5.1~31)

○ 소득세 신고, 장려금 신청, 홈택스 초기 화면 3개 접근 배너를 이용한 임시 홈페이지 운영

○ 업무화면 바로 접근 가능으로 사용자 직관성, 접근성 강화

○ 시스템 부하에 따라 변환방식 대기번호표 발급 병행 운영

임시 홈페이지 전용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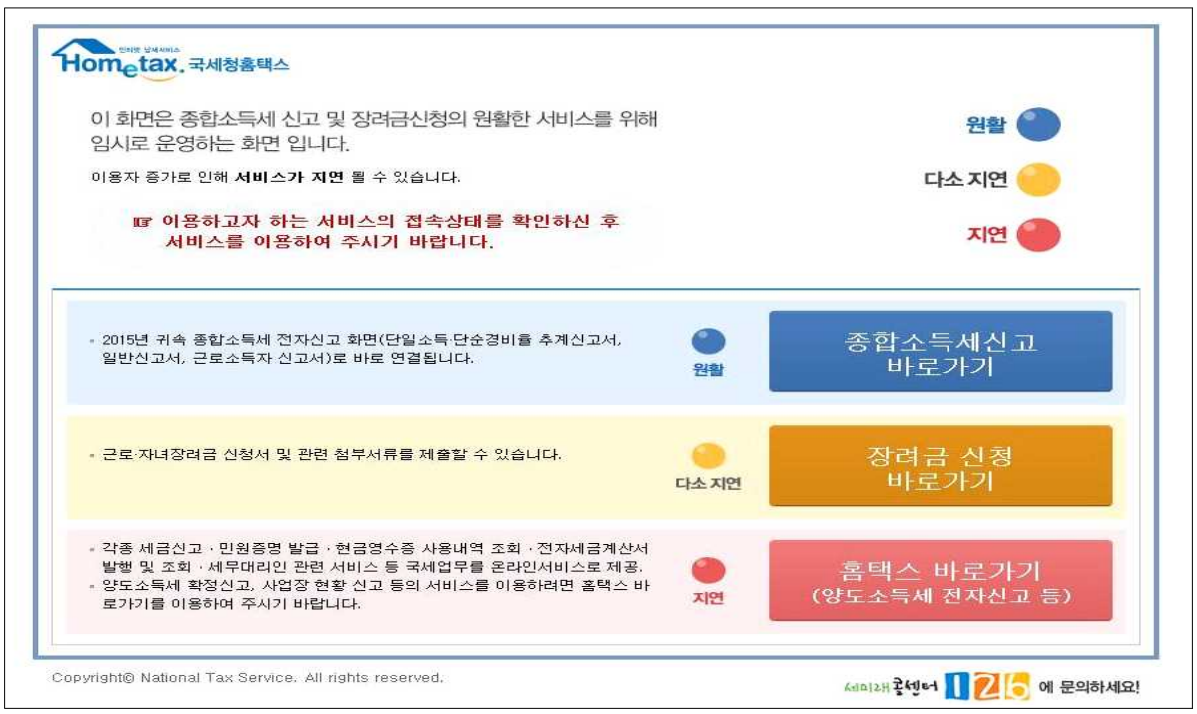

5 장려금 신청 연계 개선

□ 개요

○ 종합소득세 신고, 장려금 신청 시스템 연동으로 빠짐없는 장려금 수급 신청자 지원

□ 주요 내용

○ 소득세 신고자 중 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팝업으로 알림 기능을 제공하여 장려금 신청 화면으로 유도

장려금 신청 연동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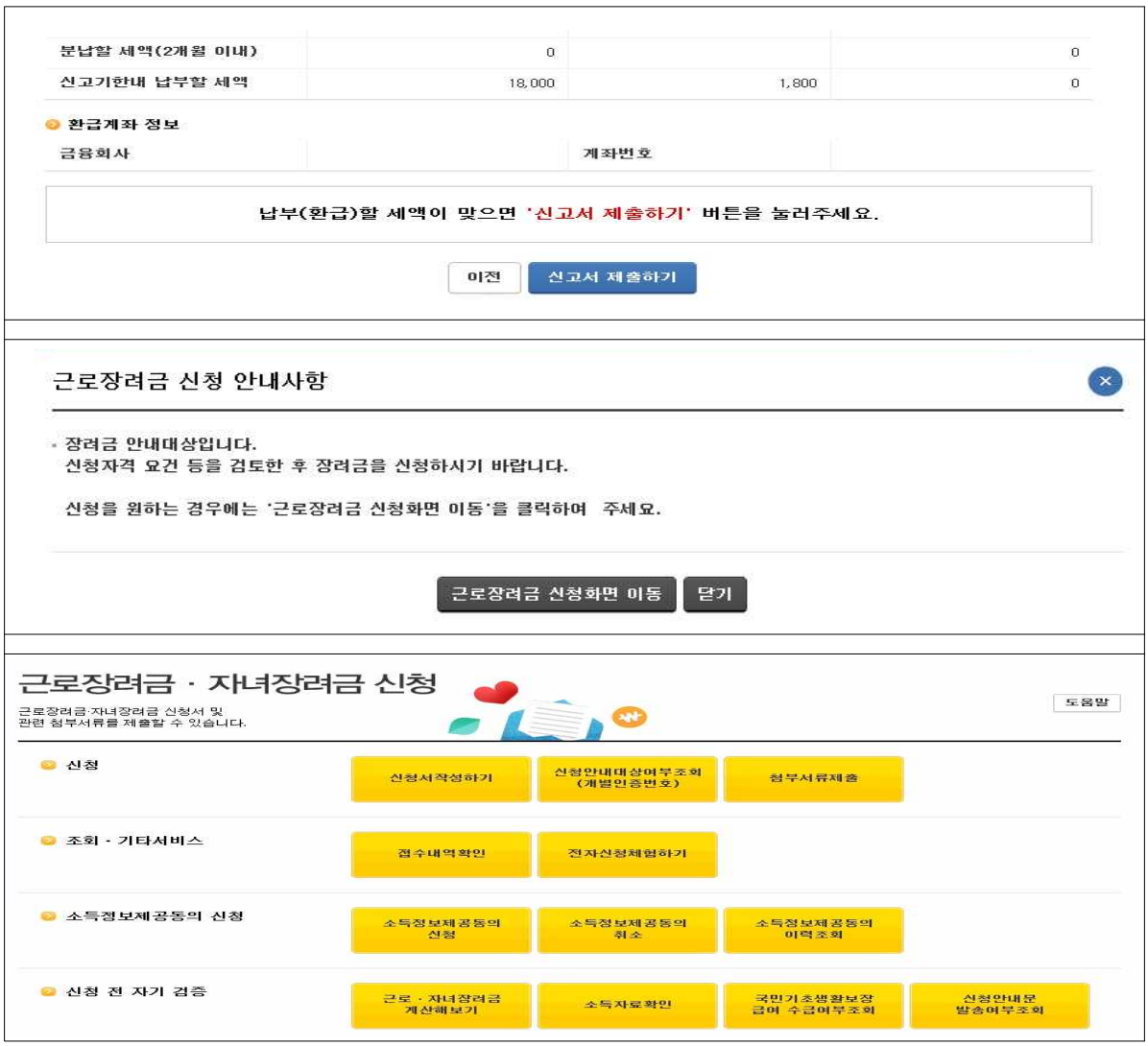

6 기준경비율 대상자 과소신고 알림기능 제공

□ 개요

○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본인 실수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과소신고로 납세자 불이익 방지

□ 주요 내용

○ 기본사항 입력화면에서 신고유형을 잘못 선택시 팝업 알림기능 제공으로 기준경비율 신고 유도

단순경비율 신고 주의 팝업안내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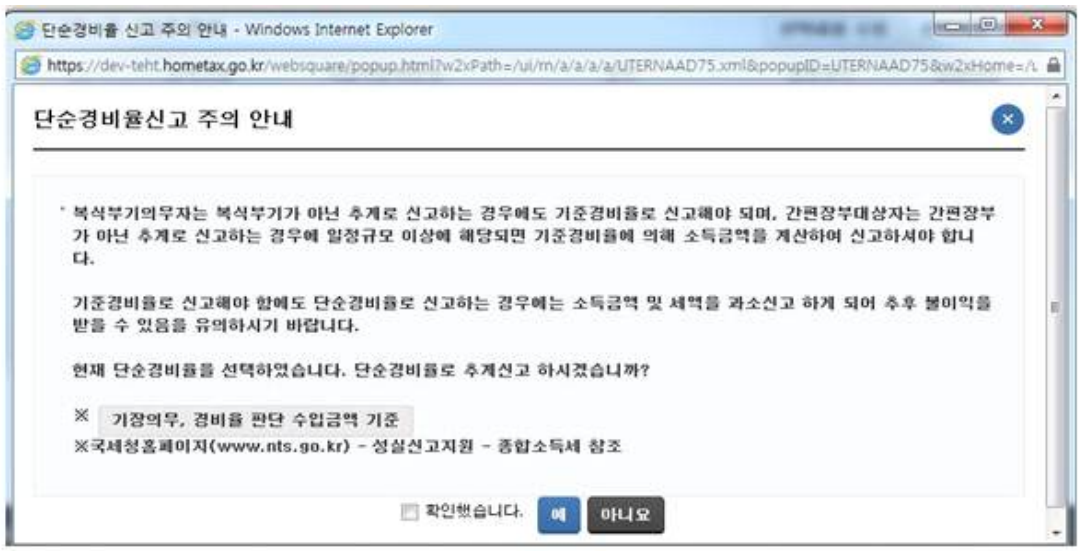

7 복식부기의무자 과다경비 차단

□ 개요

○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시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 1/2을 강제 적용토록 보완

□ 주요 내용

○ 작성방식은 자동계산 제공, 변환방식에서는 오류검증 보완

기준경비율 적용 화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기준경비율)

-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 해당 사업장별로 업종별 수입금액을 입력한 후 주요경비가 있는 경우 합계 표의 주요경비를 입력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 시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사업장 정보 [선택내용 입력/수정] [선택내용 삭제]

	소득구분	신고유형	사업자등록번호	주업종코드	상호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	40	31	000-00-00001	523984		0	0

※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을 선택하고, "선택내용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한 후 아래의 소득금액 계산(업종별)로 입력하세요.

소득금액계산(000-00-00001, 523984)(업종별)

- 1개의 사업장에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먼저 주업종코드 및 총수입금액 등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를 클릭하고, 부업종에 해당하는 내용도 주업종과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1	상호		소득구분	40
업종코드	523984 [조회]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기장의무(기준경비율 및 비교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9. 총수입금액				100,000	
경비율 적용기준				○ 일반율 ◉ 자가율	
14.기준경비율				일반율 5.5 % 자가율 5.9 %	
15.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				2,950	
18.단순경비율(%)				일반율 98.3 % 자가율 98.0 %	
19.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9*(1-18))	세법도우미			2,000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세법도우미			◉ 3.0 ○ 2.4	
20.비교소득금액(19*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6,000	

8 농가부업 소득 신고방법 개선

□ 개요

○ 비과세 농가부업 소득도 입력 가능으로 개선하여 세무서 소득합산표 검증 업무시 소명하는 납세자 불편 해소

□ 주요 내용

○ 농가부업 소득 중 젖소 등 가축종류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사육두수를 입력 가능으로 변경

농가부업 소득 입력 화면

9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안내정보 조회

□ 개요

○ 최근 2개년 내부 과세자료,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소득률 저조 등 총 12종 분석 자료를 사전에 안내하여 성실신고 유도

□ 주요 내용

○ 신고안내 정보조회 화면에서 성실신고 대상은 세부 지원 항목과 내용을 안내(내부는 인별 수입금액 조회화면에 추가 제공)

성실신고 지원 안내 화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

※아래 화면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신고안내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3월말까지 수집한 자료로 작성되어 사실과 다를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내용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보기

· 신고안내유형 및 기장의무 안내

신고안내유형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 신고안내문 조회	기장의무	

· 2014년귀속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장별 수입금액 내역

사업자번호	업종코드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자가율	일반율 (기본율)	자가율 (초과율)
214-98-58241	701201	11,000,000	21.1 %	21.1 %	38.4 %	38.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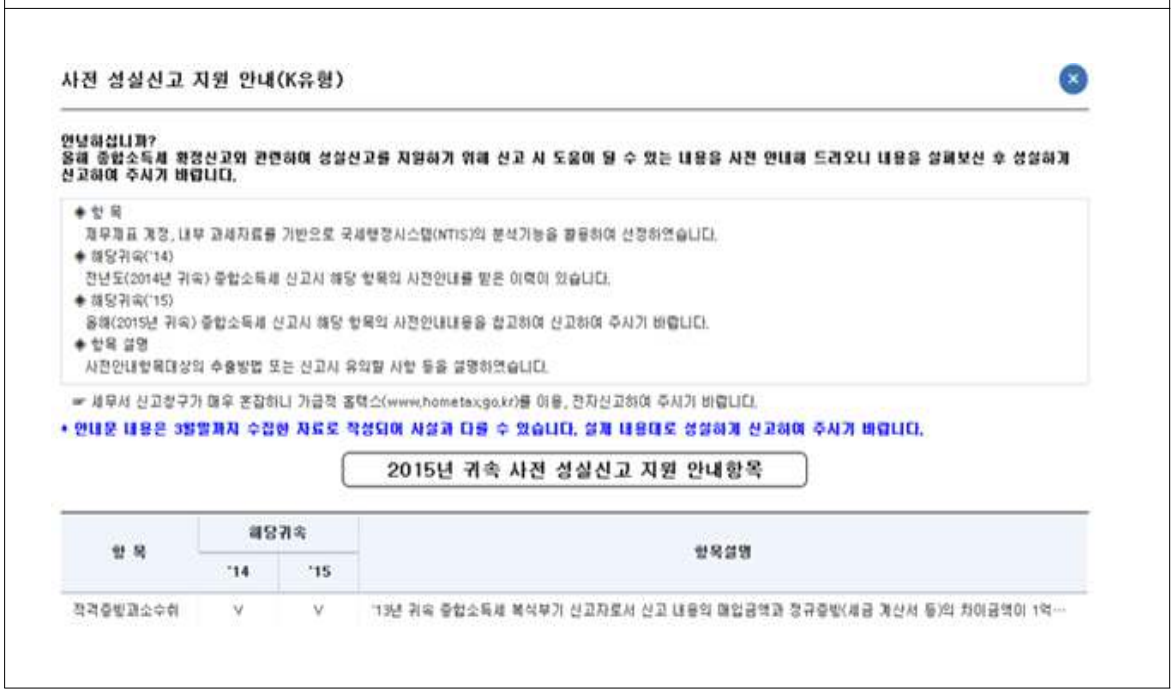
사전 성실신고 지원 안내(K유형)

안녕하십니까?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사전 안내해 드리오니 내용을 살펴보신 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 목
재무제표 계정, 내부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국세행정시스템(NTIS)의 분석기능을 활용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해당귀속('14)
전년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항목의 사전안내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 해당귀속('15)
올해(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항목의 사전안내내용을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 설명
사전안내항목대상의 추출방법 또는 신고시 유의할 사항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 세무서 신고창구가 매우 혼잡하니 가급적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 전자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 내용은 3월말까지 수집한 자료로 작성되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내용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귀속 사전 성실신고 지원 안내항목

항 목	해당귀속 '14	해당귀속 '15	항목설명
적격증빙과소수취	V	V	'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신고자로서 신고 내용의 매입금액과 정규증빙(세금 계산서 등)의 차이금액이 1억…

< 참고 > 성실신고 지원항목과 내용

항 목	항 목 설 명
① 적격증빙 과소수취	'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신고자로서 신고 내용의 매입금액과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의 차이금액이 1억원 이상입니다. * 간편장부, 기준경비율신고자 : 차이금액 5천만 원 이상
② 소득률 저조	'14년 귀속 신고소득률이 평균소득률(업종별·지역별·외형별)과 대비하여 80% 미만입니다.
③ 과세자료 존재	'14년~'15년 귀속 소득세 과세자료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있습니다. · 소득세 과세자료 : 소득세결정관련 매출매입자료,위장가공자료 ·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 가짜세금계산서 거래자료,위장가공자료
④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14년 귀속 복식부기 신고 내용의 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상 급료와임금·제수당 지급액이 없고 복리후생비가 3백만원 이상입니다.
⑤ 지급이자 과다계상	'14년 귀속 복식부기 신고 내용의 '13년~'14년 귀속 재무상태표 차입금의 합계는 1억원 미만이나 '14년 귀속 손익계산서 상 지급이자는 1천만원 이상입니다.
⑥ 재고자산 과다·과소	'13년 귀속 신고 내용의 손익계산서 기말재고와 '14년 귀속 신고 내용의 손익계산서 기초재고와의 차이금액이 1천만원 이상입니다.
⑦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14년 귀속 신고 시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이나 성실신고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⑧ 인적용역자 가사경비 포함 확인	'14년 귀속 인적용역 매출액 대비 판관비가 70%이상으로서, 사업과 관련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비·차량유지비·학원비·기타 가사경비 등이 장부상 필요경비에 포함되었는지 유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⑨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부당세액감면	'13년~14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5.31.이후 신고하면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6.30.이후 제출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⑩ 공제 감면 중복 배제	동일과세연도('13년 또는 '14년)에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세액공제·감면을 신청하였으니 공제·감면 적용에 유의하시기바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제5항)
⑪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	'14년 귀속 신고시 외부세무조정 대상자였으나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추계신고하였으니, 무신고가산세 적용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⑫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13년 또는 '14년 귀속 복식부기 신고내용이 부채총액에서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지급이자가 5백원 이상이니,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초과인출금 = 부채총액 - 사업용 자산 총액

2 자주 묻는 질문

2-1 납세자용

1 신고안내정보 조회

□ 종합소득세 메뉴가 안 보이는 경우 조치 방법

○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

※ 사업자번호로 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시 소득세 메뉴가 보이지 않음

□ 부가가치세, 사업장현황신고내역 조회 방법

○ 주민등록번호 명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는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My NTS에서 소득세 등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한 세목 조회 가능

○ My NTS에서 부가가치세, 사업장현황신고 등 사업자번호로 신고한 세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중앙 상단의 사업장 선택에서 해당 사업자번호 변경으로 조회 가능

□ 신고안내 정보, 국민건강 고용 산재보험료 조회 방법

○ 본인은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소득세 신고안내 정보조회], [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료 조회] 조회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

신고안내유형 및 기장의무 안내 귀속년도 조회

신고안내유형		기장의무	

2014년귀속 사업소득 사업장별 수입금액 내역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코드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자가율	일반율 (기본율)	자가율 (초과율)

* 2014년귀속 수입금액 총합계 : 0 원

타소득(합산대상) 자료유무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타소득 자료유무를 O, X로 표시함
※상세정보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왼쪽 상단의 [My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종류	이자	배당	사업연말정산	근로	연금	기타
해당여부						

공제항목

구분		납입액(부담액)	공제 가능액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		원	중간예납세액 전액
소득공제항목	국민연금보험료	원	부담액 전액
	개인연금저축	원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원	납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항목	퇴직연금소득공제	원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 (연 400만원 한도)의 12%(15%)
	연금저축공제	원	

2 신고 방법

□ 인터넷으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신고유형 선택 방법

○ 이중근로안내자, 소득공제 누락 등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 클릭 → 01. 기본사항 화면의 오른쪽 중앙 근무지별 소득명세 클릭 → 최종 근무지 연말정산 내역 선택

→ (이중근로안내자는 02. 근로소득신고 화면의 오른쪽 상단 근무지별 소득명세서 입력/수정하기 클릭 → 근무처별 소득명세자료 클릭하여 종전 근무지 급여 선택)

○ 신고안내 유형이 F, G, H인 경우

-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정기신고 작성 클릭 → 01. 기본사항 입력 → 02.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에 들어오면 차감납부할세액까지 자동계산 제공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부양가족을 추가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 명세의 수정을 클릭하여 입력)

* 복식부기·간편장부·기준경비율·복수사업장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일반신고서 작성 클릭

□ 근로·기타·연금·금융소득 불러오기 활성화 방법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거나, 아이디로 로그인후 추가로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 후에 불러오기 버튼이 활성화

□ 일반신고서 작성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소득공제 불러오기 방법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04. 소득공제명세서의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후 연말정산 내역 선택하면 04. 소득공제명세서 및 07. 세액공제.감면.준비금 화면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자동 입력

-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과 타소득 합산되면 시스템 자동계산 제공
- 부녀자 소득공제 : 근로소득(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 금액 3천만원이하로 해당되었다가 5월 확정신고 시 타소득 합산하여 3천만원 초과되면 공제 받을 수 없음
- 기부금 세액공제 :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한도를 재계산해야 하므로 다시 입력

(기부금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0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화면의 중앙 기부금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았거나 지정기부금만 제출하고 법정기부금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입력해야 하며, 추가로 2014년까지 이월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화면의 오른쪽 하단 기부금 조정명세서를 클릭하여 직접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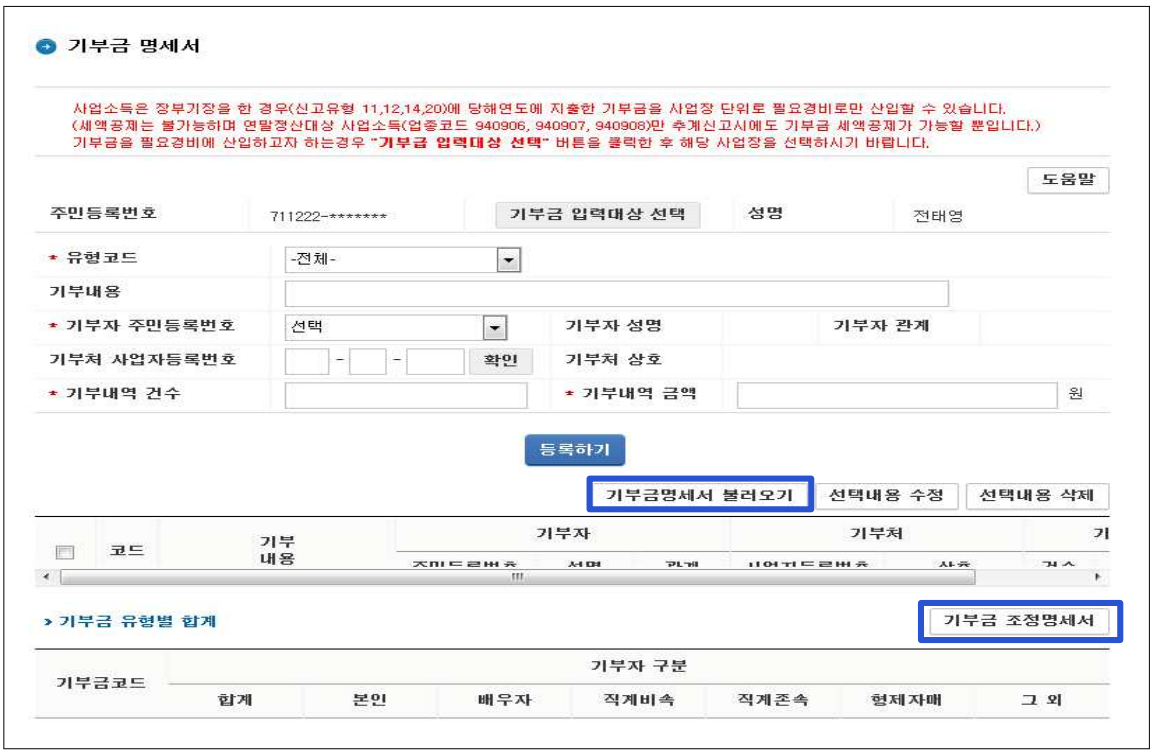

- 연금계좌세액공제 : 근로소득(연말정산) 시에는 총급여가 5,500만원이하로 15% 세액공제 받았다가 타소득 합산으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되면 12%로 재계산 입력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은 04. 소득공제명세서의 사업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후

- 연말정산 내역 선택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을 자동입력

□ 신용카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 계산기를 이용 할 수 있는 경우

○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자는 가능하며, 사업소득자(단, 성실사업자는 교육비, 의료비 공제 가능)는 공제 불가로 계산기 기능 사용 불가

□ 농가부업소득 신고 방법

○ 농가부업의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 비과세인 경우에도 관련 서류 입력으로 신고서 제출 가능

- 또한 기장신고의 경우 조정계산서,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화면에서 전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먼저 입력하고

-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에서 전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비과세 소득금액 2천만원과 이에 대응하는 수입금액 및 과세 소득금액과 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신고 가능

□ 단체(종중) 신고 방법

○ **(단체(종중)분)** 01. 단체(종중)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에 신고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된 즉시 신고 가능

- 이때 홈택스 작성방식에서는 단체(종중)명의로 별도 회원가입 절차없이 개인 명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본인분은 개인에 체크하고, 단체(종중)분은 단체(종중)에 체크하면 모두 신고 가능

- 변환방식도 개인단체구분코드에 개인('1')과 종중및단체('2')로 구분해 주면 2건 모두 신고가능

○ **(개인 본인분)** 01. 기본사항에서 개인단체 항목에서 개인으로 선택하여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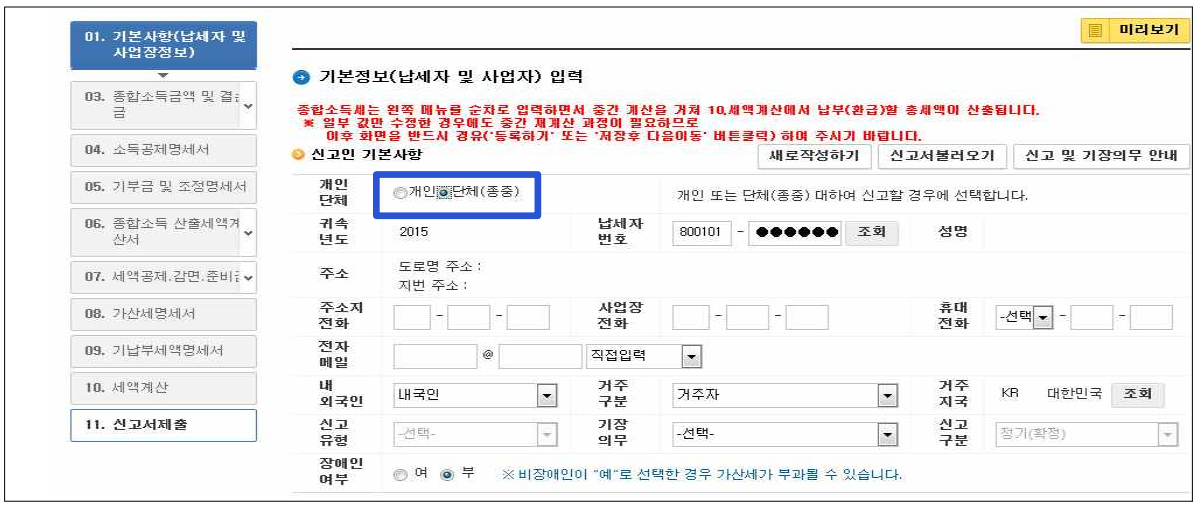

□ 공동사업자(대표자, 비대표자) 신고 방법

○ **(대표자) 일반신고서 작성화면 이용**

- 01 .기본사항 하단의 공동사업자 여부를 여로 선택하고 공동대표사업자 팝업창에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 → 02. 소득금액명세서에서 기장의무, 간편장부, 기준율 관련 화면에서 전체 수입금액, 소득금액 입력
-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화면에서 전체 구성원의 수입금액,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또는 지분비율)에 따라 입력 (사업소득명세서에는 대표자 본인 지분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만 자동 채워줌)

※ 단순경비율 : 대표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메뉴는 보이지 않으며, 대표자, 비대표자 모두 단순경비율 소득금액명세서 화면의 오른쪽 상단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에서 각자 지분만 입력(대표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제출 불가)

○ **(비대표자)** 일반신고서 작성 또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작성 화면 이용(단, 신고안내유형이 F,G,H 유형에 한함)

- 01.기본사항 하단의 공동사업자 여부를 여로 선택하고 본인이 아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 02.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화면에서 본인의 지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만 입력(사업소득명세서에는 자동 채워줌)

□ 홈택스 입력, 조회 또는 출력 시 주민등록번호 별표처리(*) 안내

○ 개인인정보보호법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방지를 위해 별표

□ 종합소득세 신고서 출력 방법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한 경우에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Step 2. 신고내역]에서 전자신고내역 조회 후 [접수번호(신고서보기)에서 출력 가능

- 또한 신고서를 작성하는 대부분의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출력 가능

-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한 경우에도 납세자 본인이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세금신고결과조회]에서 제출된 신고서 조회 가능

□ 소득세 전자신고외 추가로 증빙서류 홈택스 제출 방법

○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한 경우에 한해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증빙서류제출]에서 전자신고 내역 조회후 이미지, PDF 파일 등을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한 경우에도 납세자 본인이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서 삭제 방법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한 경우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왼쪽하단[세금신고 삭제요청]에서 종합소득세, 주민등록번호로 접수번호 조회후 삭제 요청

- 접수된 삭제요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 담당자가 삭제처리

- 삭제를 하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Step 2. 신고내역]에서 조회불가

-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한 경우에 납세자 본인이 이용하는 [신고/납부] - [세금 신고 납부] - [세금신고결과조회]에서 조회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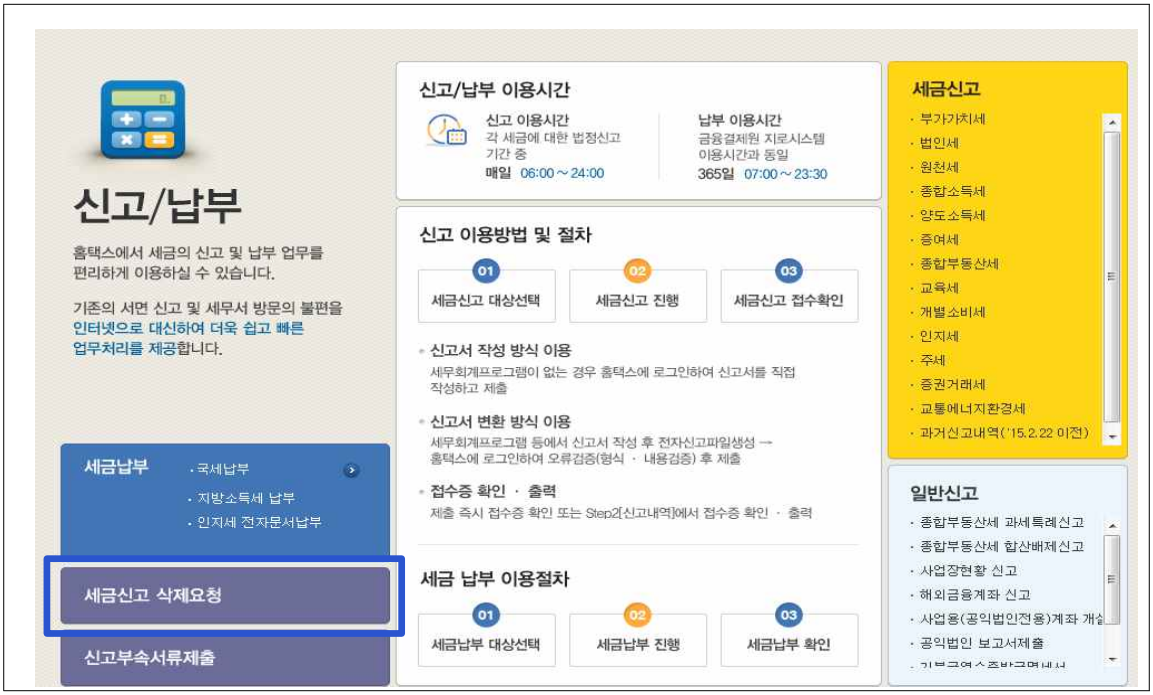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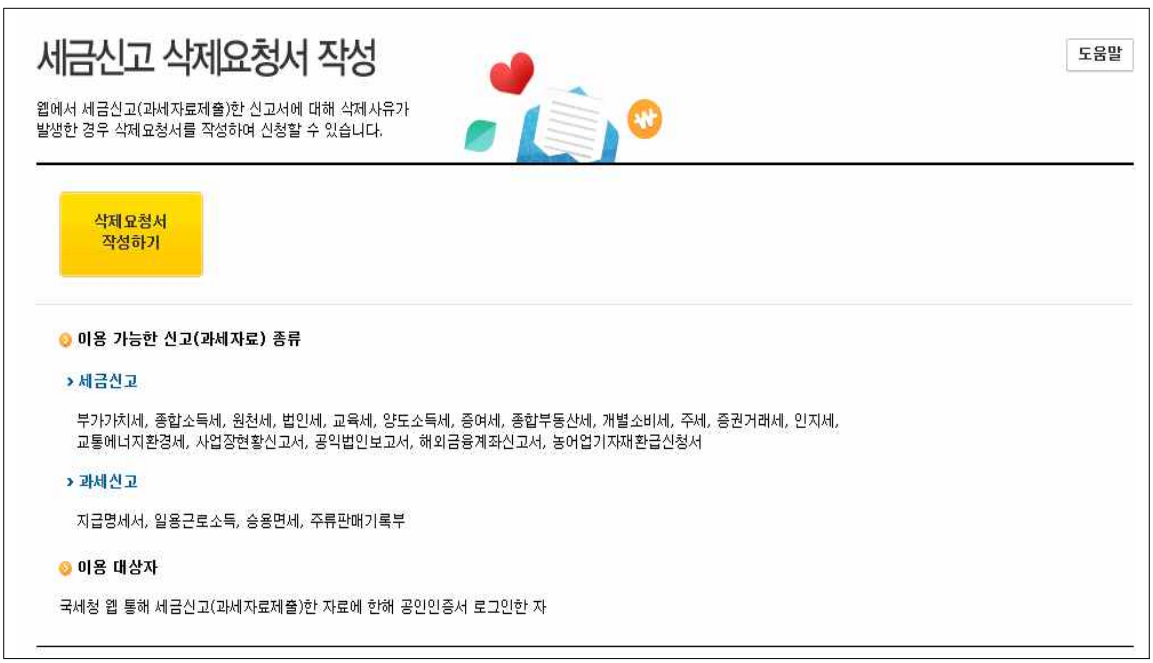

※ 신고서 제출후 신고기간 중에 다시 제출할 경우에는 최종 제출분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삭제요청 할 필요가 없음

※ 삭제요청은 신고서를 제출한 자만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 가능함

□ 소득종류를 삭제하거나 수입금액을 수정하는 경우

○ 첫 화면부터 순차로 입력하면서 중간 계산과정을 거쳐 마지막 세액계산 화면에서 납부(환급)할 세액이 산출

- 따라서 중간 화면에서 소득금액, 공제금액 등 일부 값을 수정하면 이후 모든 화면을 경유해야 중간 계산과정을 다시 거쳐 최종적으로 납부(환급)할 세액이 재계산

- 만약 화면을 건너뛰고 세액계산 화면의 신고서 작성 완료를 클릭하면 화면 내 또는 화면 간 입력한 값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오류메시지가 나타나고 신고서를 제출 할 수 없으니 수정한 화면부터 마지막 화면까지 순차적으로 입력

□ 장애인 단순경비율 입력 방법

○ 일반신고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정기신고 작성으로 신고서 입력 시 기본사항 화면에서 장애인 선택하면

-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로 계산한 단순경비율로 곱셈하여 필요경비를 자동계산

- 본인 인적공제에도 장애인공제를 자동 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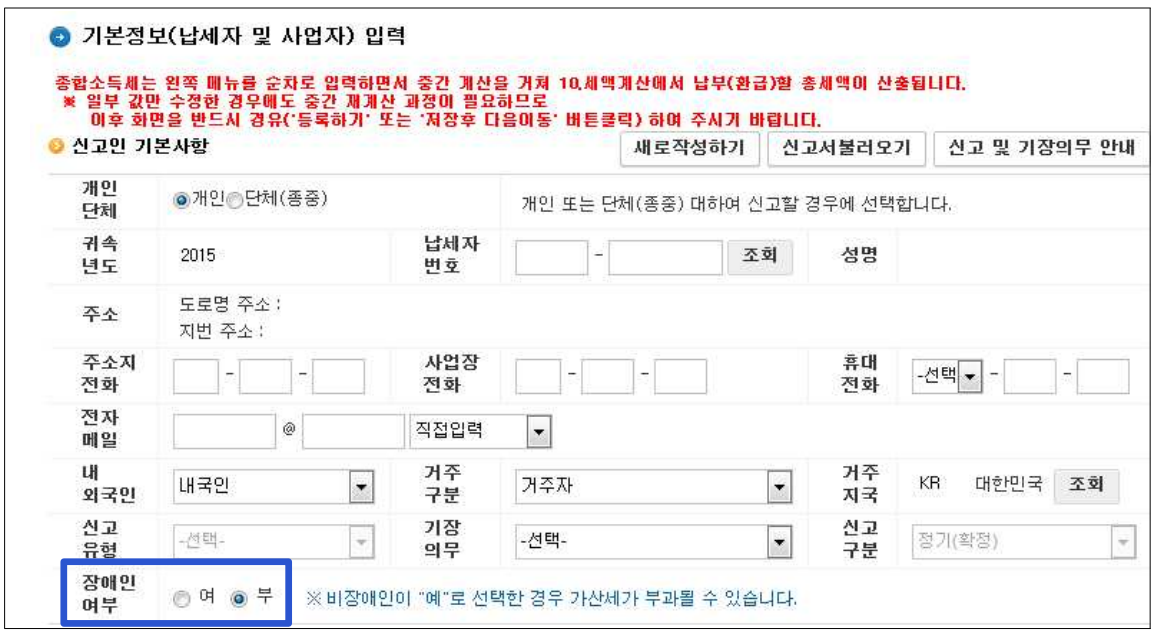

□ 표준세액공제 입력 방법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이월기부금) 및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3만원

○ (성실사업자)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신고유형 11,12,14)가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12만원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 종합소득이 있는자(성실사업자 제외)) 7만원

□ '15년 귀속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경정청구 이용가능 시기

구분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근로소득자 신고서	16.5.1~5.31 ⇒ 6.1.부터 이용불가	16.7.1. (예정)	16.7월말 (예정)
일반신고서	16.5.1~5.31 ⇒ 6.1.부터 이용불가 (성실신고확인서는 5.1.부터 변환방식으로 신고)		
파일변환신고 (변환방식)	16.5.1~6.30		

□ 모바일을 이용한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 → 모바일 공인인증서,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 홈택스 회원가입(PC, 세무서방문 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필요 없음) → 로그인 → 수입금액, 소득금액, 본인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금액, 표준세액공제, 기납부세액 등을 자동으로 채워 주며

○ 배우자 및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추가 입력으로 신고서 제출(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및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수정 가능)

※ 단, 기부금공제, 납세조합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가산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PC 를 통하여 제출해야 함

□ 각종 공제 계산기 계산후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삭제 방법

○ 각종 계산기 팝업창을 다시 띄우고 금액을 입력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산하기 클릭하고 적용하기 클릭하면 0원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일반신고서 작성하기에서 근로소득을 체크하고 각종 공제 입력후 근로소득 삭제시 이미 입력한 각종 공제 삭제 방법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고용 유지 중소기업자의 근로자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차입금이자상환액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항목이 입력 가능

○ 근로소득이 없으면 입력할 수 없도록 화면이 구성

○ 따라서 근로소득을 삭제하면 근로소득으로 공제 가능한 항목을 삭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을 다시 체크하여 삭제하거나 부득히 신고서를 새로 작성 필요

□ ’15. 5월에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 매매업자용) 화면 작성 개선사항

○ 부동산매매업 이외의 경우도 입력 가능하여 입력후 삭제 했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기본사항의 사업장정보에서 부동산 매매업(703011~703024) 및 건물 건설업(451101~451104)으로 입력

- (02.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 및 02.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서 입력한 부업종 포함)한 경우에만 메뉴 들어가고 입력 가능

□ 외국인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입력 방법

○ 외국인 자녀분은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신고하여 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된 즉시 신고 가능

- 예를 들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면 바로 신고도움창구에서 인적공제 입력 가능

3 납부 방법

□ 전자신고 한 후 홈택스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

○ **(첫째, 종합소득세)**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한 경우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납부할세액을 조회후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연계하여 본인 명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방식 및 신용카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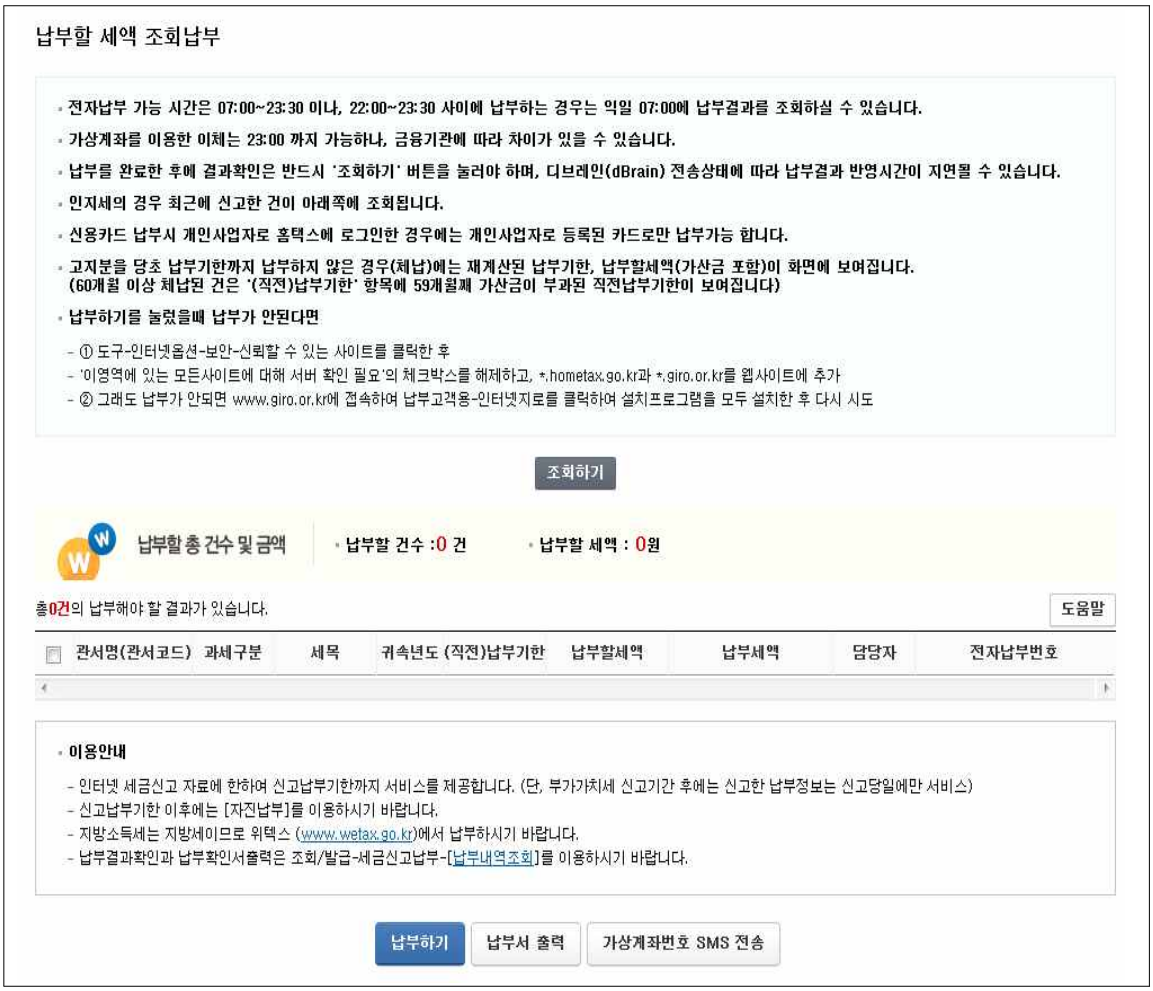

- 위의 화면에서는 법정납부기한까지 매일 07:00~23:30 사이에만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자진납부] 메뉴를 통해 당초 납부할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납부

- 납부결과확인과 납부서출력은 [조회/발급] -[세금 신고 납부] - [납부내역 조회]에서 이용 가능

○ **(둘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식에 같이 신고

-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전자신고 한 경우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지방소득세 납부]에서 납부할 세액(당해 화면에서는 종합소득세 세액이며 납부하러 가기하면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가 조회 됨)을 조회후
- [납부하기러가기]를 클릭하면 위택스(단, 서울시는 자체 운영사이트) 사이트로 연계되어 납부가능

□ 전자신고 한 후 은행사이트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이 [공과금] - [국세], [지방세]에서 조회되오니 세액 확인후 납부 가능

※ 신고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많은 자료에 대한 연계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잠시후 이용(상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

□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서 출력 방법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세금신고결과조회]에서 전자신고내역 조회후

- [납부서]의 인쇄아이콘을 클릭하여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서 출력 가능

※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한 경우에도 납세자 본인이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세금신고결과조회]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서 출력 가능

2-2 세무대리인용

1 신고안내정보 조회

□ 부가가치세, 사업장현황신고내역 조회 방법

○ 기장수임 또는 신고대리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명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My NTS에서 종합소득세 등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한 세목 조회 가능

○ My NTS에서 부가가치세, 사업장현황신고 등의 사업자번호로 신고한 세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선택에서 해당 사업자번호 변경으로 조회가능

□ 신고안내정보, 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료 조회 방법

○ 세무대리인은 기장수임 또는 신고대리 납세자에 대해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신고대리 정보조회] -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자료조회], [연금건강 고용 산재보험료 조회] 에서 조회 가능

2 신고방법

□ 일반신고서 작성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사업 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소득공제 불러오기 방법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04. 소득공제명세서의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후 연말정산 내역 선택하면

- 04. 소득공제명세서 및 07. 세액공제.감면.준비금 화면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에 자동입력

-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과 타소득 합산되면 시스템 자동계산 제공
- 부녀자 소득공제 : 근로소득(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이하로 해당되었다가 5월 확정신고 시 타소득 합산하여 3천만원 초과되면 공제 받을 수 없음
- 기부금 세액공제 :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한도를 재계산해야 하므로 다시 입력

(기부금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0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화면의 중앙 기부금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았거나 지정기부금만 제출하고 법정기부금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입력해야 하며, 추가로 2014년까지 이월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화면의 오른쪽 하단 기부금 조정명세서를 클릭하여 직접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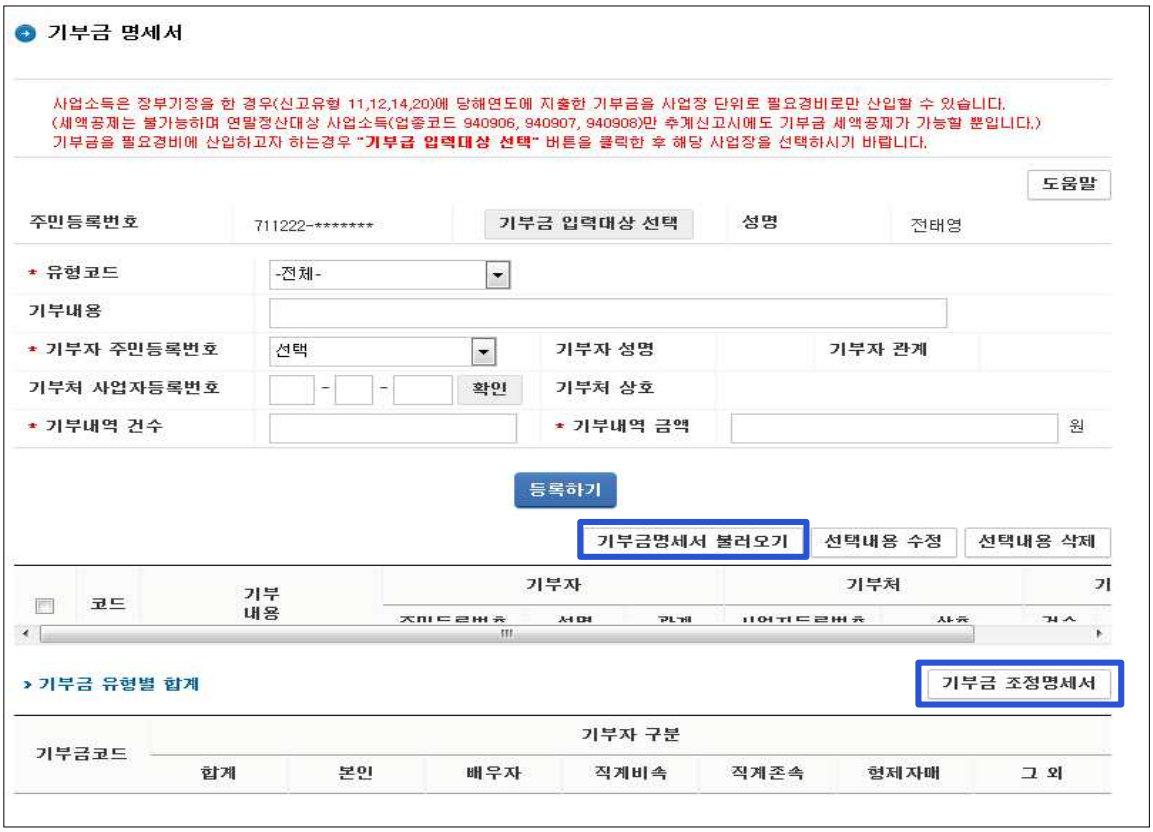

- 연금계좌세액공제 : 근로소득(연말정산) 시에는 총급여가 5,500만원이하로 15% 세액공제 받았다가 타소득 합산으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되면 12%로 재계산 입력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은 04. 소득공제명세서의 사업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후

- 연말정산 내역 선택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을 자동입력

□ 단체(종중) 신고 방법

○ **(단체(종중)분)** 01. 단체(종중)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에 신고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된 즉시 신고 가능

- 이때 홈택스 작성방식에서는 단체(종중)명의로 별도 회원가입 절차없이 개인 명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본인분은 개인에 체크하고, 단체(종중)분은 단체(종중)에 체크하면 모두 신고 가능
- 변환방식도 개인단체구분코드에 개인('1')과 종중및단체('2')로 구분해 주면 2건 모두 신고가능

○ **(개인 본인분)** 01. 기본사항에서 개인단체 항목에서 개인으로 선택하여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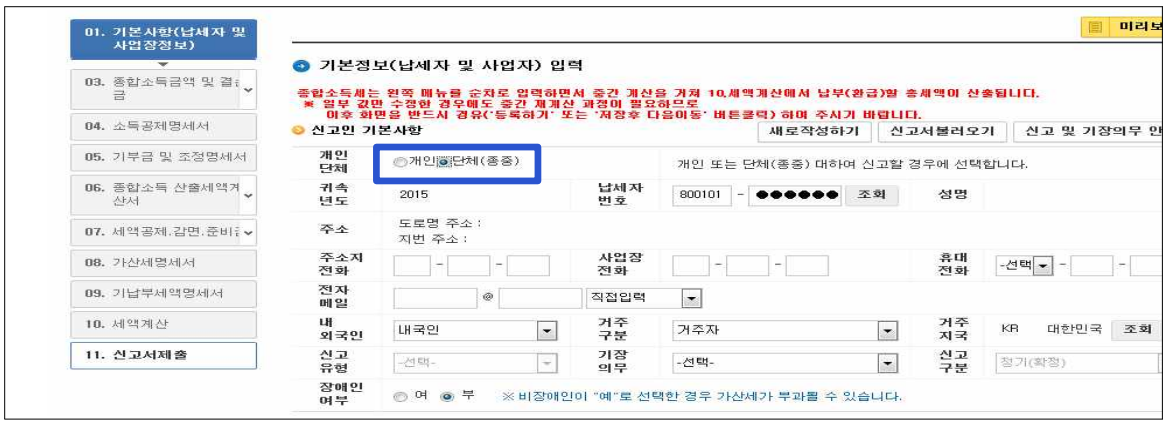

□ '15년 귀속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경정청구 이용 가능 시기

구분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근로소득자 신고서	16.5.1~5.31 ⇒ 6.1.부터 이용불가	16.7.1. (예정)	16.7월말 (예정)
일반신고서	16.5.1~5.31 ⇒ 6.1.부터 이용불가 (성실신고확인서는 5.1.부터 변환방식으로 신고)		
파일변환신고 (변환방식)	16.5.1~6.30		

□ 부서사용자 간 이중신고 간편 삭제신청 방법

○ 부서사용자 간에 이중신고를 하였을 때, 대표자 사용자id로 로그인하여 이중신고 현황을 조회하고

- 삭제할 제출자ID(부서사용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삭제 신청

- 다만, 제출 세무대리인이 다르거나 납세자가 직접 제출한 경우 제외 되며 삭제요청은 신고납부 기한후 2일이내 가능

3 납부 방법

□ 전자신고 한 후 홈택스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

○ **(첫째, 종합소득세)**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한 경우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타인세금납부]에서 기장수임 또는 신고대리 납세자 인적사항과 납부할세액을 직접 입력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연계하여 세무대리인 명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방식 및 신용카드 방식으로 납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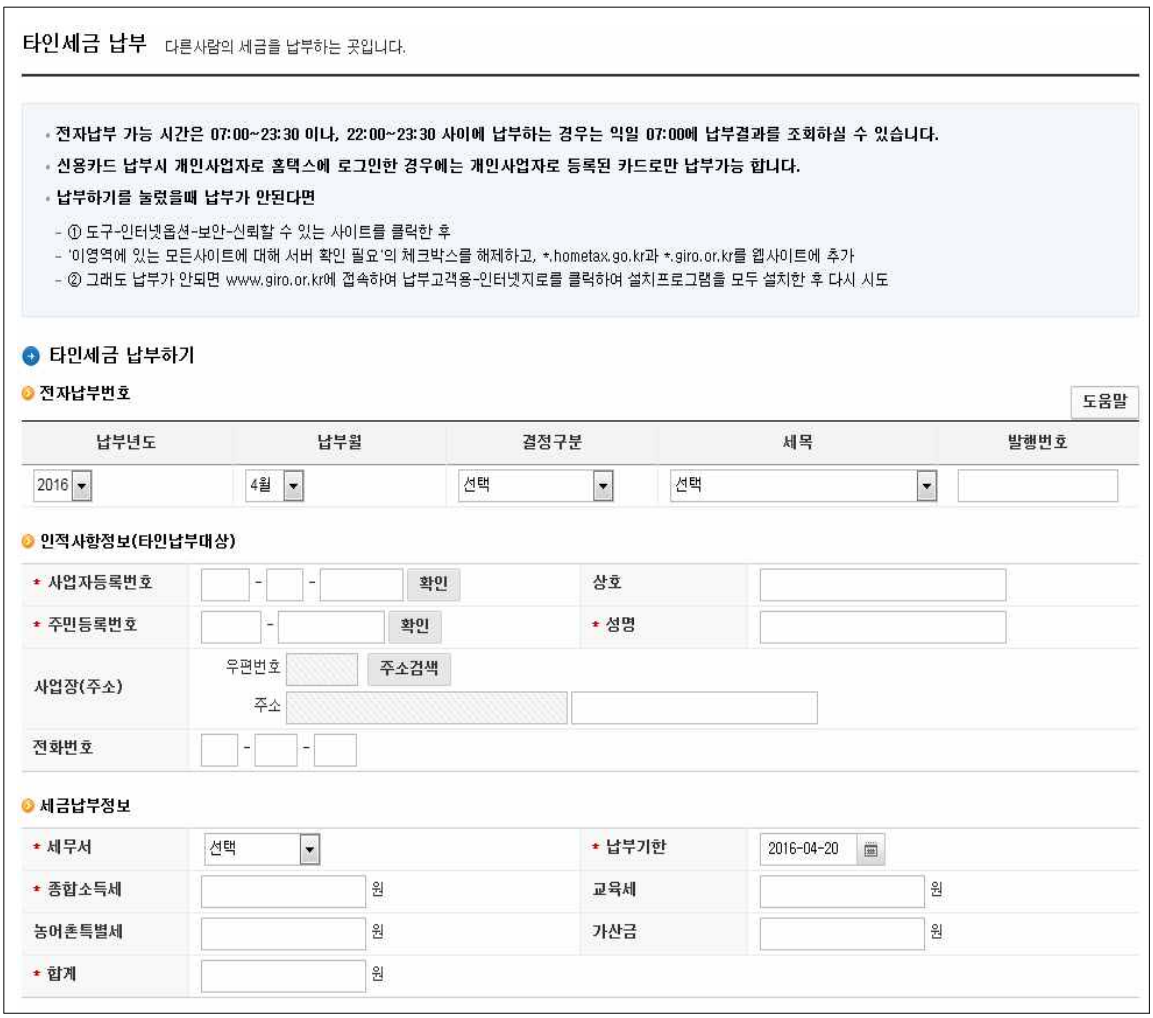

- 위의 화면에서는 법정납부기한까지 매일 07:00~23:30 사이에만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당초 납부할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납부

- 납부결과확인과 납부서출력은 [조회/발급]-[세금 신고 납부]-[타인세금 납부결과 조회]에서 이용가능

○ **(둘째, 지방소득세)** 홈택스에서는 기장수임 또는 신고대리 납세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으니 위택스(단, 서울시는 자체 운영사이트) 사이트에서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서울시(etax.seoul.go.kr)